

제 73차 이사회 회의록

1. 회의 개요

- 1) 통 지 일 : 2026. 05 18 (월)
- 2) 회의 개최 : 2026. 05 26 (화) 오후 11:00 -13:00
- 3) 회의 장소 : 칠색초칼국수
- 4) 참석 임원 : 배운규대표, 김진영이사, 지미자이사, 이은성이사,
- 5) 전차회의록 처리
- 6) 부의안건 심의 :
 - 가. 제1호안 : 전남밀알복지재단 산하시설 2026년 추경예산 (안)
 - 나. 제2호안 : 밀알사랑노인요양원 운영규정 변경(안)
 - 다. 제3호안 : 영암군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규정 변경(안)
 - 라. 제4호안 : 전남밀알복지재단 법인사무국(여수) 무료사업소개소 폐업 관련(안)
- 7) 기타사항
- 8) 폐회 선언

2. 회의 내용

사회 : 황형철 사무국장

▣ 성원 보고

재직이사 7명, 참석 이사 4명으로 성원되었음을 보고하다.

▣ 개회 선언

재직이사 7명, 참석 이사 4명 참석으로 성원되었음을 보고 하니, 배운규 대표이사가 개회를 선언하다.

▣ 인사 말씀

배운규 대표이사가 인사말씀을 하다.

▣ 전차회의록 처리

황형철 사무국장은 제72차 이사회가 2026년 01월 28일에 개최되었으며, 당시 상정된 안건들이 회의

자료에 근거하여 심의·의결된 바 있음을 보고하다. 또한 전차회의록은 관련 절차에 따라 작성되어 사전에 이사들에게 배부되었음을 설명하다.

배운규 대표이사는 전차회의록 내용과 관련하여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지 여부를 이사들에게 질의하다.

김진영 이사는 배부된 제72차 이사회 회의록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한 결과, 회의 진행 및 의결사항이 사실과 동일하게 정확히 기재되어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이에 원안대로 승인할 것을 동의하다.

지미자 이사와 **이은성 이사**는 김진영 이사의 동의안에 대하여 제청하다.

배운규 대표이사는 동의와 제청이 있었으므로 제72차 이사회 회의록 승인 안건에 대하여 이사들의 추가 의견을 확인한 바, 더 이상의 이의나 수정 요구가 없음을 확인하고, 제72차 이사회 회의록이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언하다.

▣ 부의안건 심의

가. 제 1호안 : 전남밀알복지재단 산하시설 2026년 추경예산 (안)

배운규 대표이사는 제1호 안건 “전남밀알복지재단 산하시설 2026년 제 1추경 예산(안)”을 상정하고, 사무국장에게 제안 설명을 요청하다.

황형철 사무국장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에 따라 작성된 전남밀알복지재단 7개 기관의 2027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며, 별지 1 자료를 참조하여 각 시설별 세부 예산과 예산 대비 증감 사유를 다음과 같이 상세히 보고하다.

(단위 : 천원)

시 설 명	세 입				세 출			
	2026년 본 예산	2026년 추경 예산	증감(▽)	내 용	2026년 본 예산	2026년 추경 예산	증감(▽)	내 용
총 계	18,970,835	19,102,705	131,870		18,970,835	19,102,705	131,870	
밀알장애인 활동지원 센터	5,357,348	5,357,348	-		5,357,348	5,357,348	-	-차량노후 신규차량구입 3,500 -자산취득 증액/ 예비비 감액
밀알사랑 노인요양원	2,729,605	2,588,240	-141,365	-요양급여수입:등급별 적용의 경정 228,265감액 -전년도이월금 증가 65,252증액	2,729,605	2,588,240	-141,365	-종사자 인원변동 및 보수체계 변경으로 74,635 감액 -시설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추진에 따른 일반회계 시설비 136,000감액

보성군 장애인 복지관	3,009,325	3,101,366	92,041	-통합돌봄인원증가 72,144 증액 -주간활동서비스 증가 33,273증액 -공모사업 미선정/후원금 감소 21,109 감액 -이월금 증가로 14,965 증액	3,009,325	3,101,366	92,041	-최중증통합돌봄 사업 80,654 증액 -주간활동서비스 51,994 증액 -교육지원사업 22,880감액 -장애인일자리 12,715감액
보성군 장애인 활동지원	5,046,226	5,046,226	-		5,046,226	5,046,226	-	-중증가산수당 80,000,증액 -교육수당16,000 증액 -활동지원사 보수 교육비 12,800감액 -계수조정 예비비 86,500감액
보성군 장애인 직업재활센터	796,060	822,136	26,076	-이월금 26,076증액	796,060	822,136	26,076	-인건비 10,336 증액 -예비비 15,740 증액
영암군 장애인 종합복지관	1,741,117	1,885,389	144,272	- 확정내시에 따른 보조금 157,162 증액 -공감과치유탐방 4,500 실행 편성	1,741,117	1,885,389	144,272	-공공요금 16,746증액 -비품구입 12,400증액 -지역사회통합사업 8,300 증액 -급식지원 46,859증액 -사회재활 9,600 증액 -재가복지 7,364 증액 -홍보지원 6,470증액
영암군 장애인 (통합돌봄)	291,154	302,000	10,846	-2026년 발달장애인지원 국도비보조금 사업비 확정으로 인한 증액(△10,846,000)	291,154	302,000	10,846	-개인별통합돌봄지원 서비스프로그램비용 증액 - 7,913,900 - 사례회의 및 외부자문확대로 인한 통합고객관리사업 증액 - 1,000,00

황형철 사무국장은 “2026년도 산하시설 제1차 추가경정예산은 관계 법령 및 회계규칙에 따라 편성되었으며, 세입·세출 증감 사유는 이용인원 변동, 보조금 확정내시 반영, 사업운영 조정 및 전년도 이월금 반영 등에 기인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전체적으로 재정운영의 안정성과 예산 집행의 적정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편성하였다”고 보고하다.

이에 대해 배운규 대표이사는 “별첨 자료를 통해 각 시설별 추경예산 편성 내용과 증감 사유가 충실히 작성되었음을 확인하였다”며 추가 보완 설명을 진행한 후, 이사들에게 의문사항이 있는지 질의하다.

이은성 이사는 “사전에 배부된 자료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각 시설의 사업 특성과 운영 상황을 반영하여 적정하게 편성되었음을 확인하였다”고 말하고, 본 안건에 동의 의사를 표명하다.

지미자 이사는 “전남밀알복지재단 산하시설의 사업 규모와 서비스 영역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만큼, 향후에도 체계적인 재정관리와 투명한 회계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본 안건에 제청하다.

배운규 대표이사는 안건에 대한 가부를 묻다.

이에 김진영 이사, 이은성 이사는 일제히 동의 의사를 표명하다.

배운규대표이사는 “동의와 제청이 있으며 더 이상의 질의가 없으므로, 제 4호 안건 「2026년도 산하시설 제1차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참석 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하다.”

나. 제 2호안 밀알사랑노인요양원 운영규정 변경(안)

황형철 사무국장은 “밀알사랑노인요양원 운영규정 변경(안)은 장기요양기관 운영환경 변화와 관계 법령 및 지침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시설 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다”고 설명하다.

이어 주요 개정사항으로 본인결혼 5일, 자녀결혼 1일, 부모 및 배우자 상은 5일로 동일하며, 자녀 또는 그 자녀의 배우자 사망 2일에서 3일로,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또는 외조부모 사망은 2일로,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사망은 1일로 추가 조정하였음을 보고하다.

이에 대해 배운규 대표이사는 “금번 운영규정 개정은 직원 복리후생 기준을 명확히 하고, 장기요양기관 운영의 합리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사항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하며, 이사들에게 의견이 있는지 질의하다.

이은성 이사는 “경조휴가 기준이 기존보다 구체적으로 정비되어 직원들이 규정을 보다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본 안건에 동의 의사를 표명하다.

김진영 이사는 “시설 종사자의 근무환경과 복지 수준 향상은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과도 직결되는 만큼, 현실적인 기준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하며 본 안건에 제청하다.

이에 지미자 이사는 일제히 찬성 의사를 표명하다.

배운규 대표이사는 “동의와 제청이 있으며 더 이상의 질의가 없으므로, 제 2호 안건 「밀알사랑노인요양원 운영규정 변경(안)」은 참석 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하다.”

다. 제 3호안 영암군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규정 변경(안)

황형철 사무국장은 영암군장애인종합복지관운영규정 변경(안)에 대하여 “복지환경 변화와 시설 운영 현실을 반영하고 조직 운영의 효율성 및 인사·복무 체계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운영규정을 개정하고자 한다”고 별지 2를 바탕으로 설명하다.

먼저 직제규정 제7조(직제) 개정사항에 대하여 설명하며, 상담사례지원팀, 맞춤기능향상팀, 평생교육지원팀, 기획운영지원팀, 지역사회연계팀, 통합돌봄지원팀에서 기획홍보팀, 운영지원팀, 상담사례팀, 평생교육팀, 지역사회팀, 통합돌봄팀으로 변경하였다고 설명하다.

이어 인사관리규정 개정사항에 대하여 설명하며, 징계사유를 보다 구체화하여 정당한 이유 없는 몰품·

금품 반출, 직무 이용 부당이익 취득, 복무규정 위반, 상사의 정당한 지시 불이행, 복지관 운영 방해행위, 직무수행능력 부족 등 시설 운영 질서를 저해하는 사항을 신규 징계사유로 추가하였다고 설명한다. 또한 징계의결 요구 절차와 제출자료를 명문화하고, 성희롱·성폭력 사건의 경우 전문가 의견서 첨부 규정을 신설하는 등 절차적 체계를 보완하였다고 보고한다.

아울러 기존 면직·정직·감봉·견책 중심의 징계체계를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으로 확대하여 중징계와 경징계를 구분하였으며, 징계 효력과 재임용 제한, 재심 절차, 손해배상 책임 및 징계처분대상 관리 규정을 신설하여 인사관리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강화하였다고 설명한다.

또한 급식(무료급식) 지침 개정사항과 관련하여, 급식실 이용 대상을 복지관 이용인과 직원 중심으로 조정하여 급식 운영의 효율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하였다고 설명한다. 이에 따라 활동지원사, 외부 강사, 외부 방문자 등의 이용 기준을 정비하고 외부 이용 제한을 강화하였으며, 직원 식사비 기준은 장애인 무료급식 단가 기준으로 조정하여 운영 기준의 일관성을 확보하였다고 보고한다.

이에 대해 **배운규대표이사**는 “금번 운영규정 개정은 조직 기능 재정비와 인사·복무 체계 개선을 통해 복지관 운영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사항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하며, 이사들에게 의견이 있는지 질의한다.

김진영 이사는 “조직체계와 징계절차가 보다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비되어 운영의 안정성과 투명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하며 본 안건에 동의 의사를 표명한다.

이은성 이사는 “급식 운영기준과 인사관리 체계를 명확히 정비한 것은 이용인 중심 서비스 강화와 조직 운영의 공공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된다”고 평가하며 본 안건에 제청한다.

이에 **지미자 이사**는 일제히 찬성 의사를 표명한다.

의장은 “동의와 제청이 있으며 더 이상의 질의가 없으므로, 제 3호 안건 「영암군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규정 변경(안)」은 참석 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한다.”

라. 제 4호안 전남밀알복지재단 법인사무국(여수) 무료직업소개소 폐업관련(안)

황형철 사무국장은 무료직업소개사업은 장애인 및 취약계층의 고용지원을 목적으로 전남밀알복지재단 제 72차에 법인사무국(여수), 보성군장애인복지관(보성), 영암군장애인종합복지관(영암) 사업을 운영하기로 승인받아, 각 지자체 신고후 진행하였으나, 법인사무국 무료직업소개사업의 경우 사업 운영 과정에서 전담인력 배치에 따른 인건비 부담이 있으며, 지역 내 유사기관과의 기능 중복으로 인해 사업 운영의 효율성과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재검토가 필요하여, 법인사무국(여수) 무료직업소개사업의 폐업을 제안한다고 설명한다.

이에 **배운규 대표이사**는 현재 여수시 및 지역 내 공공 고용지원기관과 민간 취업지원기관에서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상황이며, 법인의 역할은 직접 사업 수행보다는 기존 공공자원과의 연계를 통해 장애인 및 취약계층의 고용지원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이 보다 효율적이라고 부연 설명하며, 아울러 법인의 조직 운영 안정성과 재정 건전성을 고려할 때 사업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히다.

지미자 이사는 사업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운영 대비 실질적인 효과와 지속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할 때 폐업 추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며 본 안건에 동의하다.

김진영 이사는 지역 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유관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대상자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본 안건에 제청하다.

는 법인 및 산하시설의 핵심 복지사업에 인력과 재원을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본 안건에 찬성하다.

이은성 이사는 사업 운영 여건과 법인의 중장기 운영 방향을 고려할 때 폐업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며 원안 의결에 동의함.

참석 이사 전원은 충분한 심의를 거쳐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함.

2026. 05. 26. (화)

기록 : 황 형 철 사무국장

배 윤 규

배 윤 규 (인)

이 은 성 (인)

김 진 영 (인)

지 미 자 (인)